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
 편집인 : 기획홍보과장
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
 전화 : 490-3315~9



제1587호 2009. 11. 6.

공 고

제2009-876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

인사발령

기능직 공무원 휴직(가사간병) 4

※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.

- ▶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: 490-3317 / FAX: 490-3640
- ▶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
- ▶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-3일 18: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

D-3일 접수

→

D-2일 편집·교정

→

D-1일 편집·교정

→

D일 발간

- ▶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 람										



공 고

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-876호

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「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09년 11 월 6 일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**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
전부개정조례안**

1. 개정이유

- 「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, 이를 기초로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포상금 지급한도 입법 미비규정 보완(안 제4조)

- 점용료, 사용료,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
- 조세범처벌법」 및 「조세범처벌절차법」에 따라 통고처분·고발, 탈세정보 제공 등으로 지방세를 추징하게 한 경우 지급한도 1천만원 이하로 규정

나.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「조세범처벌법」 및 「조세범처벌절차법」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함.(안 제3조제5호)

다.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목적 명확화(안 제5조제1항)

○ ‘미수액 징수’심의 ⇒ ‘세정발전과 세입증대’ 심의로 목적을 명확히 함.

라. 포상금 지급시점 보완(안 제8조)

○ 제안, 제도개선을 제외한 포상금은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.

○ 부과 또는 징수액에 행정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쟁송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변경

마. ‘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’에 따른 조항 정비

○ ‘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’(법제처)계획에 따라 어렵고 모호한 조문을 알기쉬운 조문으로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 용지를 세워서 작성)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(참조 : 세무1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(신내동 662번지)

(중랑구청 세무1과 전화 : 490-3345 ~ 9, FAX : 490-3850)

인사발령

기능직 공무원 휴직(가사간병)

2009. 11. 5.

증량구청장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부서	직급
1	김민자	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(2009.11.05.~2010.11.04.)	면목제7동	기능 8 급 지방공무원 (필기)